

1. 개정이유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나. 기타 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조회목적	[] 대체역 편입 신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부당한 범죄경력·수사경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경찰서장	→	통 보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조회목적	대체역 편입 신청						
조회결과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이 회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체복무요원 소집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집일시

소집기간

소집장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장 직인

※ 여비수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비지급 명세/시기 : 소집여비 원(소집 후 5일 이내)

여비지급 방법 : 계좌입금(단, 병무청 등록계좌가 없어서 아래 "우체국 제출"란에 √ 표시된 사람은 우체국에서 수령)

소집 여비를 받았을 때 (우체국 수령 시 영수증)		소집 여비를 찾으실 때	
통지번호		통지번호	[] 계좌입금 [] 우체국 제출
성명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소집일		성명	
소집장소		생년월일	
금액		소집일/장소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소집하지 못한 경우 입금 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0		여비지급기간	
		금액	십 만 천 백 십 일
(본인 보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 보관용)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합숙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활동복,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필기구, 손톱깎이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4. 휴직을 하고 소집이 된 사람이 복무를 마치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집일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일 연기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병역법」 제63조제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소집면제 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제65조제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사유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비수령 위임장

소집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 소:
- 관 계: 연락처(☎) :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앞쪽 하단의 "소집여비를 찾으실 때"의 "우체국 제출"란에 √ 표시된 사람의 소집여비는 지급기간 동안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 소집 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하단의 "소집여비를 찾으실 때"의 "계좌입금"란에 √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비 입금계좌를 등록(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를 통해 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액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응소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기재된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 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회신해야 한다.</u>